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17
----------	------

2016년 12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발 의 자 : 김창원 의원(찬성자 17인)
- 제 출 일 : 2016년 9월 9일
- 회 부 일 : 2016년 9월 22일
- 상 정 일 :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12월 2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이유 (제안설명자 : 김창원 의원)

가. 제안 이유

- 맞벌이 또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여가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일부 지역의 마을 공동체에
서 주도하고 있는 각종 교육과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보편적 복
지 차원에서 일반 아동까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행정적·재
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임.

나. 주요내용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대
상 사업에 추가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 다. 입법예고(2016. 9. 28. ~ 10. 6)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범위에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등 각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마을 공동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각종 교육과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 하려는 것임.
- 현재, 마을 사업을 성장단계별로 보면, 주민모임형성, 실행사업, 공간사업, 마을단위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성장 단계별 지원사업〉

성장단계	사업명	사업내용	관련기관
주민모임형성 (씨앗기)	<u>주민참여지원사업</u> (이웃만들기)	한 번도 지원사업을 받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초기 모임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지역공동체담당관
	부모커뮤니티	공통의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부모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	여성정책담당관
↓			
실행사업 (새싹기)	공동육아 마을미디어 에너지자립마을 아파트공동체 <u>마을기금</u>	육아, 미디어, 에너지 등 주민의 관심이 많은 분야를 각 부서별로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업을 활성화하는 사업 ->아파트공동체는 자치구 매칭사업이며 자치구에서 선정	보육담당관, 문화예술과, 에너지시민협력과 공동주택과, 지역공동체담당관
	우리마을 활동 지원사업	마을사업의 경험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지역공동체담당관
↓			
공간사업 (성장기)	마을기업	일자리, 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단위 기업육성 지원사업	사회적 경제과
	마을예술창작소	생활예술 공간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공간사업	문화정책과
	우리마을 공간 지원사업	공간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공간 사업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활력소	공유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 확충 사업	지역공동체담당관
↓			
마을단위 사업	마을학교	학교와 주민이 함께 공동체 기반의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연합사업	마을단위에 있는 다양한 모임이 함께 연합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지역공동체담당관
	<u>마을계획</u>	동단위에서 주민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스스로 해결하는 사업	지역공동체담당관

- 마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국은 지역공동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문화예술과, 에너지시민협력과, 공동주택과, 사회적경제과, 청소년담당관 등이고, 2016년 주요 공모사업은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 등 10개 사

업으로, 예산액은 58억 7천 2백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마을북카페 조성사업은 우리마을지원사업으로 통합하였고, 청소년휴카페는 소관부서(청소년담당관) 자체사업 추진으로 관리대상에서 제외.

<2016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접수 및 선정현황>

□ 공모사업 : 10개 사업(예산액 : 5,872백만원)

(2016.11.1 현재)

연번	사업명(담당부서)	예산액	접수건수	선정건수					지원액(백만원)	
				계	지원형태(연도)		모임유형			
					신규	계속	주민	단체		
공모사업 소계		5,872	1,192	728	386	342	621	97	4,628	
1	부모커뮤니티 (여성정책담당관)	371	239	157	108	49	152	5	328	
2	공동육아 (보육담당관)	420	76	49	25	24	47	2	356	
3	마을과 학교 연계사업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상생지원	330	12	9	3	6	8	1	330
		모임지원	95	52	19	11	8	18	1	93
4	아파트마을공동체 (공동주택과)	726	245	222	109	113	222	-	497	
5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시민협력과)	706	47	45	24	21	45	0	393	
6	마을예술창작소 (문화정책과)	414	61	23	7	16	12	11	290	
7	마을미디어 (문화예술과)	915	134	65	34	31	35	30	559	
8	마을기업 (사회적경제과)	485	24	10	5	5	-	-	389	
9	다문화마을공동체 (외국인다문화담당관)	60	18	12	8	4	5	7	57	
10	우리마을지원사업 (지역공동체담당관)	공간	1,050	130	64	21	43	38	26	1,036
		활동	300	154	53	31	22	39	14	300

가. 마을사업의 범위 확대 (안 제9조)

○ 안 제9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등 각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에 따라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마을 사업”이라함)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음.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p>	<p>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9. (현행과 같음) <p>10.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등 각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p> <p>11.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p>

- 동 조례 제9조제1항에서 마을 사업은 9개의 종류를 예시로 들고 있으며(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제9조제1항제10호에서는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개정조례안은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문화 체험 등 각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마을 사업에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 조례 제9조각호에 마을 사업에 대한 예시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제10호에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동 규정이 없어도 관련 마을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이미 다수의 유사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개정안과 같이 별도 조항으로의 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집행부는 아동, 청소년 등 모든 계층에 대한 마을 사업이 현 조례를 기반으로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개정 조례안 추가로 마을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나, 아동, 청소년 등 특정계층이 추가될 경우 여성, 장애인, 노인, 1인가구 등의 계층에 대한 추가여부 등 또 다른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제9조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조례안에서 “마을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동 조항과 체계적으로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마을자원”의 의미도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는바,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조례 제27조에 따라 마을 안에서의 배움과 돌봄, 성장을 통한 해결과 상생 등을 위해 마을활력소, 마을배움터를 이미 조성하고 있으며, 동 공간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을배움터

급속한 사회변화와 왜곡된 교육현실에 따라 경쟁 및 고립이 심화되고 있어 청소년, 청년 및 주민들의 문제에 대해 마을 안에서 보듬고 소통을 통한 건전한 성장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간임.

*** 마을배움터 기능**

-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배움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발굴
- 청소년, 청년 및 마을주민의 참여와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 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마을활력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욕구에 반해 민간 사유 시설에 조성된 마을공동체 공간의 지속성이 미흡(임대계약 만료, 젠트리 피케이션)함에 시, 구에서 유휴 공공시설 활용 및 민간시설 매입 등을 통해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직접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권역별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임.

*** 마을활력소 기능**

-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 주민의 참여 확대 및 소통을 위한 나눔터 및 사랑방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등 각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 9.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u>10.</u> (생략)</p> <p>② (생략)</p>	<p>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① -----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u>10.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등 각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u></p> <p><u>11.</u> (현행 제10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